

# 해상안전 신규 및 재교육 고찰

윤귀호\* · 남대원\*\* · 이윤석\*\*\*

\*,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선박운항과, \*\*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A Consideration on New Education and Reeducation of Maritime Safety

Yun, Gwi-Ho\* · Nam, Dae-Won\*\* · Lee, Yun-Sok\*\*\*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Department of Ship Operation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Navigation Training Center

핵심용어 : 해상안전, 구명설비, 기초안전, 상급안전, 선원, 재교육

Key Words : Maritime Safety, Life Saving Appliances, Basic Safety, Advanced Safety, Crew, Reeducation.

**해상안전교육 근거(법령)**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에 의한 교육으로써, 국제장해에 취약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하는 자에게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구명설비, 구명통신설비, 생존이론, 소화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선박의 조난시 생존과 동상항해시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기초안전교육 근거(법령)-별표2**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유요기간
기초안전교육	1. 데려온 또는 연대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편속유선, 계면의 안전 및 시야 확보를 위하여 승무원이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계면, 계면의 정교함, 계면의 안전 또는 조종방어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함과 및 소파, 기초응급처치, 안락하고 비상시조종 비상 시 작위보조장치의 단방향에 관한 사항 담당하여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제10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이선의 선박지선, 인양어선의 잠관장 또는 조기관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4.5일(제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연대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선(205) 편속유선, 계면의 안전 및 시야 확보를 위하여 승무원이 하는 사람(선박지선의 잠관장 또는 조기관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지선의 잠관장 또는 조기관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단방향에 관한 사항		2일(제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해상안전교육 근거(법령)**

- 선원법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유능부원교육·전자기관부원교육·명키기초교육·명키보수교육·의도관리자교육·고속선교육·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해상안전교육 근거(법령)-별표2 비교**

비 고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대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장해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 나. 198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원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도 할 수 있다.
  -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장 보충사 교육·상급소파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동원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제교육의 경우는 2일)도 할 수 있다.
3. 약제 <2015.1.8>
4. 1월 이상의 승무원이 있는 자 또는 1989년 8월 24일 이전에 선구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잠관장 및 조기관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 First Author : captyun@kmou.ac.kr, 051-410-5095  
 † Corresponding Author : lys@kmou.ac.kr, 051-410-5098